



장애인 학대보호 개선 위한 권고기준 1.0

전 문

이 권고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장애인 학대보호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 보도 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개인의 SNS, 유튜브에도 적용됩니다. 장애인 학대에 관한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 마디, 한 장면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2차 가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무심코 전해지는 정보가 낙인효과를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이 조성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대 피해자뿐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5가지 원칙과 13가지 세부 지침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쁜 기사 사례와 좋은 기사 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기준은 장애인 학대 보도 개선을 위한 첫 시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 1.0

5가지 원칙

1

학대 사건 보도는, 제 2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징이 비교적 쉽습니다. 특히 피해자 정보(주소, 나이, 이름, 사진, 동영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CCTV 등 자료화면 사용 시,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특정 사건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제목 및 헤드라인 작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묘사 혹은 비하가 있는지 반드시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범죄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01

학대 사건 보도는, 제 2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학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제 2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모방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방안·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방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학대 사건의 예방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접수처, 절차 등을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Tip

장애인 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언론사가 장애인 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아래의 학대예방 권고문 게재를 제안합니다.

※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고민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중대 범죄에 대한 경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3

피해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면 안됩니다.

보도 시 피해자를 연민의 대상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묘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보도는 객관적이며 사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특정한 이미지로 규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02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징이 비교적 쉽습니다.
특히 피해자 정보(주소, 나이, 이름, 사진, 동영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개인적 정보나 신고자, 가해자 등의 구체적 언급은 피해자를 특정짓게 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 등 개인적인 정보는 보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피해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짓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체로 창고에 가둬’ 지적장애 동생 학대한 친누나 부부 체포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매형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몸을 학대하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역에 사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으며, 지난해 11월 A씨를 직접 돌보겠다는 B씨를 따라 퇴원해 B씨의 집에서 두 달여 간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해 집 안에 남동생을 있도록 했다”면서 “화상 등 상처는 남동생이 자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피해자 특징(A씨)

- 지역에 사는 부모와 거주 경험
- B씨를 따라 퇴원, 두달여간 거주
- 다리미로 발생한 화상자국 등



피해자 개인정보, 지역 노출

2

신고자 및 가해자 정보는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나 가해자의 세부 정보 역시, 일단 공개가 되면 피해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구체적인 정보 또한 보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역명 및 사건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나 지역명, 그리고 다른 세부 사항들은 보도 시 피해자나 관련된 사람들을 특정 짓게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장애인 생계급여 8600만원 빼돌리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 지역에 기관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 씨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기관 이사장 ㄱ(70·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ㄴ(63·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소 장애인들 통장을 관리하던 ㄱ씨 등은 매달 이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명 및 가해자 특정

- 지역에 □기관 이사장 ㄱ(70남)
- 피해자는 □기관 중증 정신장애인들
-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와 가해자의 세부정보는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명 및 가해자 정보 노출

03

CCTV 등 자료화면 사용 시,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특정 사건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료화면의 사용은 뉴스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자료화면의 사용은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관계없는 사건의 CCTV 등 자료화면의 재생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은 무분별한 정보 전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애인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화면은 사용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사건 보도 시, 자료화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보여주기보다는, 음성 처리 또는 일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음성 변조보다 자막처리 또는 연기자·성우 활용 등을 사용하며, 얼굴이나 민감한 신체의 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장애를 극대화하는 촬영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묘사할 때, 그들의 장애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의 촬영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휠체어의 확대 촬영이나 앵글 위치 조정 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과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일부분인 장애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Q1.**자료화면이나 실제 영상이 없을 때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상황을 설명하는 일러스트·그림을 사용합니다.

→ **GOOD** 사건 본질에 집중하게 하면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Q2.**장애 특성을 강조하는 장면 연출은 왜 문제가 되나요?**

장애를 극적으로 표현하면 '불쌍함·무력함'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해 차별을 재생산합니다.

→ **BAD** 휠체어 실루엣, 보조기구 클로즈업 등 장면

Q3.**학대 장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면 보도 가능하지 않나요?**

모자이크 처리해도 폭행 장면 노출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충격을 재경험시키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 **BAD** CCTV 속 폭행 장면,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노출 화면

Q4.**그렇다면 피해 상황을 시각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맥락 중심 서술과 구조·조치 과정 설명, 그리고 전문가 코멘트를 활용한 간접적 시각화가 적절합니다.

→ 간접적 시각화 예시

- 사실 중심 서술: "피해자는 3개월간 학대를 받았으며, 신고 후 긴급조치 시행"
- 절차 흐름도 : 학대발생 →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전문가 인터뷰: 학대 유형·대응 방향 코멘트

04

제목 및 헤드라인 작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묘사 혹은 비하가 있는지 반드시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제목과 헤드라인 만으로도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제목 및 헤드라인도 자극적, 반복적, 묘사적 표현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기사의 본문뿐만 아니라, 제목과 헤드라인에서도 자극적이거나 반복적인 표현, 불필요한 세부 묘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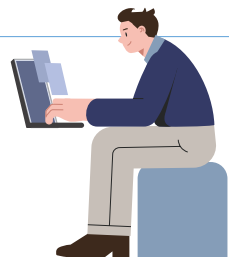
제목 및 헤드라인도 법적으로 지정된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및 헤드라인에서도 장애 관련 법적으로 지정된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표현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거나 편견을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선정적인 기사 타이틀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적인 표현이나 헤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을 부추기며,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소처럼 쟁기질까지... 70대 장애인 수년간 노동 착취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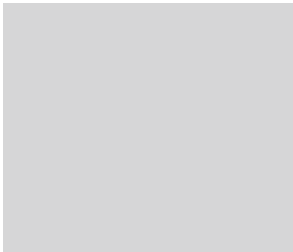
"눈도 안 보이는 게"... 시각장애인 늑골 골절시킨 60대男 징역형

'나체로 창고에 가둬' 지적장애 동생 학대한 친누나 부부 체포

'대소변 못가린다' 변기에 몸뭍고 학대...장애인시설의 '두얼굴'

지적장애 누나 묶어 굶겨 죽인 동생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세금 갠아먹는다" 장애인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



[Redacted text block]

[Redacted text block]

[Redacted text block]

[Redacted text block]



05

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범죄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보도 시, 균형 잡히고 공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 가해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 사실 부각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장애가 편견이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를 과장하거나 장애를 근거로 감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2

관련성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나 사건의 이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장애를 최소 범위에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보도에서 생략하셔야 합니다.

3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전체를 모욕할 수 있는 용어는 피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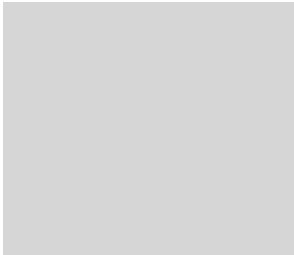


주요 뉴스

발달장애인 영아 투기 사망사건, 활동보조인도 '무죄'

발달장애인(1급)이 2세 영아를 건물 3층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백모(5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edacted text block]



[Redacted text block]

[Redacted text block]

[Redacted text block]

[Redacted text block]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2017년부터 중앙 및 17개 시·도에 총 19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전국공통)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장애인학대사례판정
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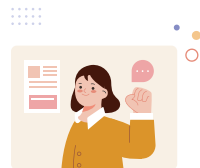
상담 및 사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명	전화·팩스	누리집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2-6951-1790 F 02-6951-1799	www.naapd.or.kr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탈타워 1412호(양평동)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2-3453-9527 F 02-3453-9528	www.saapd.or.kr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51-715-8295 F 051-715-8297	www.bsaapd.or.kr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가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53-716-8295 F 053-716-8290	www.daapd.or.kr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4층(본리리)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32-425-0900 F 032-425-0990	https://icaapd.or.kr/2018/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62-716-1633 F 062-716-1638	www.gaapd.or.kr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차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42-631-5667 F 042-637-5669	www.djaapd.or.kr	대전 동구 계족로 44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52-260-8295 F 052-260-8297	www.uaapd.or.kr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빌딩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44-905-8295 F 044-905-8298	www.sjaapd.or.kr	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보람동)
경기남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31-287-1134 F 031-293-2388	www.ggaapd.or.kr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월로 130, 경기 누리센터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31-851-1007 F 031-851-1008	www.ggnaapd.or.kr	경기 양주시 고삼로 43번길 28, 경기북부 누리센터 306호(삼승동)
	관할 지역(10):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33-264-8296 F 033-264-8297	www.gwaapd.or.kr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43-287-8295 F 043-287-8296	www.cbaapd.or.kr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 54,라데팡스빌딩슬레이관 303-1호(분평동)
	관할지역(8):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43-847-8295 F 043-847-8296	www.cbnaapd.or.kr	충북 충주시 경고개로 166, 3층(연수동)
	관할지역(3):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41-551-8295 F 041-551-8297	www.cnaapd.org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법조프라자301호(청당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63-227-8295 F 063-227-8290	www.jbaapd.or.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1-10, 경희궁빌딩 5층(효자동)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61-285-8298 F 061-800-8889	www.drj.or.kr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54-282-8295 F 054-282-8296	www.gbaapd.or.kr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55-603-8295 F 055-608-6295	www.gnaapd.or.kr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064-900-9695 F 064-900-9795	www.jaapd.or.kr	제주 제주시 청풍로 5길 21, 1층(이도이동)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 1.0

발행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02-6951-1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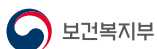
누리집 www.naapd.or.kr

발행일 2025년 11월

팩스 02-6951-1799

Copyright © 2025. All Rights Reserved.

본 홍보물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